

엔지니어링사업자

■ 업무내용

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구, 기획, 자문, 지도

■ 등록기준

1.. 기술능력

사업종류	기술자격
엔지니어링업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같은 목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5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별표 2 제2호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기술계엔지니어링)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력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 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1 제2호에 따른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
 - 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2 제2호(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4) 위 표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일 것.
- 나) 해당 기술분야의 별표 2 제2호가목(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나 학력자일 것. 이 경우 학력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 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할 것
- 5)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별표 2 제2호 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 6)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위 표의 엔지니어링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며,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전문분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7) 2011년 5월 1일 당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토질·지질	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비고

가)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나)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다)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라) 위 가) 및 나)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학력·경력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2013년 1월 1일 전에 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제3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바) 2013년 1월 1일 당시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에 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한다.

사) 2013년 1월 1일 당시 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및 위 바)에 해당하는 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시설·장비

사무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